##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76

발의연월일: 2025. 1. 6.

발 의 자:김문수・김준혁・강경숙

문정복 • 이수진 • 조계원

김남희 · 김우영 · 정을호

김동아 · 진선미 · 백승아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된 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 하거나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개인정보를 목 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한편, 정부는 2024년 5월 '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'을 발표하는 등 효과적인 교육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교육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개방·제공하며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개방·제공 과정에서 교육부장관 등이 민감 정보에 대해서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더라도 이를 복원하여 학생 정보가 유출되거나 학교를 서열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어 부정사용에 관한 처벌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 음.

이에 비식별처리된 정보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제4항 및 제11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4항 중 "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행위. 다만, 제2 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2. 제공받은 자료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학생 개인정보나 학교명을 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행위
- 3. 제공받은 자료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여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나 학교 소재 지역을 서열화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행위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1조(벌칙) ①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8조의 2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② 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

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4항제1호를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교육관련기관이 보유・	제8조의2(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
관리하는 정보의 수집 연계 •	관리하는 정보의 수집 · 연계 ·
가공 및 제공 등) ① ~ ③ (생	가공 및 제공 등) ① ~ ③ (현
략)	행과 같음)
④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	4
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	<u>다음 각 호의 어느</u>
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	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
<u>서는 아니 된다</u> .	<u>서는 아니 된다</u> .
<u>&lt;신 설&gt;</u>	1.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
	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행위.
	다만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
	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<u> &lt;신 설&gt;</u>	2. 제공받은 자료를 식별 가능
	한 상태로 복원하여 학생 개
	인정보나 학교명을 사용하거
	나 이를 누설하는 행위
<u>&lt;신 설&gt;</u>	3. 제공받은 자료를 식별 가능
	한 상태로 복원하여 순위나
	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
	학교나 학교 소재 지역을 서
	열화하거나 이를 누설하는 행
	<u>위</u>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벌칙) 제8조제1항 또는 제 제11조(벌칙) ① 제8조의2제2항에 8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 공받은 자가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한 때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 8조의2제4항제2호 또는 제3호 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

② 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 2제4항제1호를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